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수입식품·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할 것에 관한 질검총국의 공고** 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공고  2015년 제91호  수입식품·화장품 검사검역증서 발급업무를 진일보 규율하고 검사검역증서 발급의 통일성, 엄숙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<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>, <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 검역법>, <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>, <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>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증서발급, 문자규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  1. 증서의 종류  검사검역을 통과하였거나 1차 검사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효과적인 처리를 거친 후 검사검역을 통과한 수입식품·화장품에 대해 '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'을 발급하며 '위생증서'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아니한다.  2. 증서의 문자  수입식품·화장품에 대해 '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' 발급 시 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재함과 더불어 증명란의 증서 문자를 '위의 화물이 이미 검사검역 관리를 거쳤음에 따라 수입을 허가한다.'로 통일화 한다. 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. <출입국검사검역증 관리방법>(국질검통[2009]38호)와 이 공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.  질검총국  2015년 7월 28일 |  | **质检总局**  **关于进一步规范进口食品、化妆品检验检疫证单签发工作的公告** 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公告  2015年第91号  为规范进口食品、化妆品检验检疫证单签发工作，保证检验检疫证单签发的统一性、严肃性，依据《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》《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》《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》《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》等有关规定，现对签发证单、文字规范等有关事项公告如下：  一、证单种类  对进口食品、化妆品经检验检疫合格的，或检验检疫不合格但已进行有效处理合格的签发“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”，不再签发“卫生证书”。  二、证书文字  对进口食品、化妆品签发“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”时，除按质检总局规定填写相关内容外，证明栏中证书文字统一为“上述货物业经检验检疫监督管理，准予进口。”。  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。《出入境检验检疫签证管理办法》（国质检通〔2009〕38号）与本公告不一致的以本公告为准。  质检总局  2015年7月28日 |